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21. . .	
연월일	(제 회)	

고령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 출 자	고령군수 (총무과장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무통계담당 심사필

고령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1. . .

제출자 : 고령군수

1. 제정이유

- 2022년 1월 준공 예정인 쌍림행복이음터 내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립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 및 군수의 책무(안 제1조 ~ 제3조)

- 고령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
- 작은도서관의 정의
 - “작은도서관”이란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 - 1) 공립 작은도서관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작은도서관
 - 2) 사립 작은도서관 :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·운영하는 작은도서관
- 군수의 책무

나. 기능 및 설치기준(안 제4조 ~ 제5조)

- 기능
 - 자료 및 정보의 수집·정리·보존·축적·제공·열람·대출
 - 지역의 공공도서관,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등
- 설치기준
 - 1,000권 이상의 도서관자료
 - 6석 이상의 열람석
 -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
 -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비한 장서

다. 공립 작은도서관 및 사립 작은도서관(안 제6조 ~ 제7조)

- 공립 작은도서관의 설치
-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
-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

라. 자치운영위원회 설치(안 제8조)

- 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

마. 운영자의 직무·자격 및 운영인력(안 제9조 ~ 제10조)

-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
- 운영인력

바. 개관 및 휴관(안 제11조 ~ 제12조)

- 개관
- 휴관

사. 회원·자료대출 및 출입제한(안 제13조 ~ 제14조)

- 출입제한
- 회원제 및 자료대출

아. 자료의 이관 등(안 제15조)

- 자료의 이관 및 폐기

3. 조례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 제3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

나. 예산관련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: 의견 없음(2021. 10. 5~2021. 10. 25.)

라.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규제영향 분석 결과 : 해당사항 없음

고령군 조례 제 호

고령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서관법」과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작은도서관을 통하여 차별과 장애 없이 자유롭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령군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작은도서관”이란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,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공립 작은도서관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작은도서관
2. 사립 작은도서관 :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·운영하는 작은도서관으로, 「도서관법」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고령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주민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고,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능)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.

1. 자료 및 정보의 수집·정리·보존·축적·제공·열람·대출
2. 지역의 공공도서관,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
3.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평생학습 교육
4.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
5.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

제5조(설치기준 등) ① 작은도서관은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1. 1,000권 이상의 도서관자료
2. 6석 이상의 열람석

3.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(단, 건물면적에 현관·휴게실·복도·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)

4.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비한 장서

②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희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6조(공립 작은도서관) ① 군수는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에 따라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.

③ 공립 작은도서관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)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,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매년 평가할 수 있으며, 평가 결과 제5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에 미달하거나 「도서관법」 제3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8조(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)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작은도서관별로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9조(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) 운영자는 도서의 대출·반납, 도서 정리와 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, 다음 각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사서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
2. 독서 및 교육관련 자격증(독서지도사, 독서치료사, 학습지도사, 유아교육,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)소지자
3. 도서관 학교,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일정기간 수료자
4.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

제10조(운영인력) ① 작은도서관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인력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.

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, 이들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1조(개관) 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,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.

② 운영시간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역적, 계절적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12조(휴관) ①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

1. 공립 작은도서관 : 매주 월요일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이 정하는 공휴일

2. 사립 작은도서관 : 정기 휴관일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이 정하는 공휴일

② 자료의 정리, 도서관 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

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, 천재지변 등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13조(출입의 제한)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4조(회원 및 자료대출)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하고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15조(자료의 이관 등) 작은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,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취

◇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 제3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5조(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)

- ③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〈 소관 부서명 〉

고령군 총무과	
연 락 처	054-950-6272